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9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7. 7. 9
- 다. 상 정 일 자 : 제1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7.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민병구 총무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세출 총괄

○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 예산현액은 179,814,391,170원(전년도 이월금 12,680,445,970원 포함)이며,

수납액은 179,671,939,160원으로 지출액은 165,501,231,420원

- 그 차인 잔액은 14,170,707,740원(잉여금)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 각각 이월

○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 명시이월 6,860,773,210원이며, 사고이월은 700,702,600원

계속비이월은 6,895,700원, 보조금(국·시비) 집행잔액은 1,151,150,970원

○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51,185,260원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A+B)	장수결잔액 (C)	수 납 액 (D)	미수납액처리			잔액 00
							계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	
총 계		167,133,945	12,680,446	179,814,391	20,262,219	179,671,989	29,530,280	3,117,918	26,472,362	859
소 계		155,380,080	10,077,292	165,666,322	18,726,114	165,255,055	22,491,049	3,077,023	19,414,026	880
일반 회계	지 방 세	19,786,000	-	19,786,000	22,142,143	19,800,549	2,341,594	410,840	1,980,754	894
	보 통 세	15,575,000	-	15,575,000	16,440,771	15,653,955	786,836	492	781,884	952
	목 적 세	3,561,000	-	3,561,000	3,604,613	3,575,703	28,910	-	28,910	992
	과년도수입	600,000	-	600,000	2,086,759	570,911	1,555,888	405,888	1,119,951	272
	세 외 수 입	21,232,273	10,077,292	31,309,565	51,731,044	31,381,589	20,140,455	2,666,183	17,483,272	610
	경 상 적 세외수입	10,975,258	-	10,975,258	11,022,537	11,000,474	22,063	-	22,063	998
	임 시 적 세외수입	10,257,015	10,077,292	20,334,307	40,708,537	20,381,115	20,127,422	2,666,183	17,461,239	506
	지방교부세	7,735,118	-	7,735,118	7,456,626	7,456,626	-	-	-	1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30,358,934	-	30,358,934	30,359,234	30,359,234	-	-	-	100
	보 조 금	76,476,705	-	76,476,705	76,037,057	76,037,057	-	-	-	100
	국고보조금	44,357,488	-	44,357,488	44,282,940	44,282,940	-	-	-	100
	시·도비 보 조 금	32,109,267	-	32,109,267	31,754,127	31,754,127	-	-	-	100
	지 방 채	-	-	-	-	-	-	-	-	0
	소 계		115,491,515	2,688,154	118,179,669	21,536,105	14,466,874	7,089,231	40,865	7,088,366
특별 회계	의료보호기금	392,756	-	392,756	607,342	407,512	199,830	7,065	192,765	671
	주요소득기금 생활안정기금	1,528,400	-	1,528,400	1,591,559	1,522,341	69,218	-	69,218	957
	주 차 장	5,330,804	-	5,330,804	12,427,530	5,633,265	6,794,315	3,380	6,790,465	453
	주거환경 개선사업	249,042	-	249,042	291,694	255,836	35,888	-	35,888	87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427,536	2,339,197	5,766,733	5,767,686	5,767,686	-	-	-	100
기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586,277	263,957	850,234	850,234	850,234	-	-	-	100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D)	익년도 이월액 (E)	불용액 (C-D-E)
총 계		167,133,945	12,680,446	179,814,391	166,126,102	165,501,231	7,568,371	6,744,788
일반회계	소 계	155,589,030	10,077,292	165,666,322	152,275,600	154,650,729	7,365,115	3,650,477
	일 반 행 정	42,608,477	822,662	43,431,139	42,530,523	42,530,524	19,800	880,815
	사 회 개 발	98,472,012	4,472,476	102,944,488	96,540,205	96,540,205	4,148,005	2,256,277
	경 제 개 발	11,992,503	5,736,542	17,729,045	14,814,139	14,189,288	3,197,310	342,447
	민 방 위	291,844	52,774	344,618	284,208	284,207	0	60,411
	자원맞기타경비	2,224,194	△1,007,162	1,217,032	1,106,505	1,106,505	0	110,527
특별회계	소 계	11,544,915	2,603,154	14,148,069	10,850,502	10,850,502	203,256	3,094,311
	의료보호기금	362,756	0	362,756	351,049	351,049	0	11,70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28,450	0	1,528,450	102,000	102,000	0	1,426,450
	주 차 장	5,390,804	0	5,390,804	3,987,035	3,987,035	0	1,403,769
	주거환경개선사업	249,042	0	249,042	99,083	99,083	0	149,959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427,586	2,339,197	5,766,783	5,467,997	5,467,997	196,360	102,426
	홍 티 마 을 공영개발사업	586,277	263,957	850,234	843,338	843,338	6,896	0

3. 검토의견

가. 세입분야

- 2006년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 사업비 등을 가산한 세입예산 현액이 1,798억 1,439만 1천원이며, 이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2,092억 6,221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85.9%인 1,796억 7,193만 9천원을 수납
-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1,652억 3,506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8.0%로서 전년도 89.1%보다 약간 낮으며,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198억 54만 9천원을 수납하여 89.4%로 전년대비 약 1%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은 315억 8,158만 9천원을 수납하여 61.0%로 전년 대비 9.6% 감소되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74억 5,662만 6천원, 조정교부금 303억 5,923만 4천원, 국·시비보조금 760억 3,706만 7천원이 각각 징수 결정되어 전액 징수
- 미수납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부분이 23억 4,159만 4천원, 세외수입이 201억 4,945만 5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전체 미 수납액은 224억 9,104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의 11.98%로써 전년도 203억 347만 2천원보다 21억 8,757만 7천원이 증가
- 그중 30억 7,702만 3천원이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및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 되었으나 결손액이 전년 15억 420만 9천원 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되었고 이는 대부분 세외수입중 이행강제금 등의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한 금액임. 다음연도 이월되는금액은 194억 1,402만 6천원이고 이중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의 미 수납액은 38억 7,316만 4천원이며 특히 과태료나 범칙금은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81.55%나 됨. 이 처럼 해마다 미수납액이 과다한 점을 감안하면 매년 선래 답습적 세입편성을 지양하고 세입통계를 수치삼아 당초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임. 또한 이에 따른 효율적 징수체제와 철저한 재산추적 등으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15억 3,610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7.0%인 144억 3,687만 4천원을 징수함으로써, 전년도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였으나 대체로 해마다 징수율은 줄어 들고 있음. 미 수납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1억 9,983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921만 8천원, 주차장 67억 9,431만 5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586만 8천원으로서 특별회계 미 수납액도 주차장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율 또한 45.3%로 해마다 부진함으로 이 또한 별도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중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미수금은 전년대비 6억 7,975만 1천원이 증가한 70억 5,833만 6천원으로써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로 67억 6,048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미수납 이월액은 전년대비 비슷하나 의료보호기금은 1,201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9,276만 5천원
- 다음 결손처분은 의료보호기금 706만 5천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383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간 하향되었으나 그 사유 또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것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멸시효 전 회수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저소득층의 회수 불분명한 채납금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기타 사업은 채납이 없음.

나. 세출분야

-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 등의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1,798억 1,439만 1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1,655억 123만 1천원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75억 6,837만 1천원을 공제한 67억 4,478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은 전년도 101억 9,714만 7천원보다 34억 5,235만 9천원이 감소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56억 6,632만 1천원이며 이중 지출은 1,546억 5,072만 9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93.35%가 집행된 것으로 전년도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실적 90%보다 개선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집행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등은 90%이상의 높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개발비와 민방위 등은 80%대의 비교적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예산에 계상되어있으나 집행치 않은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총 36억 5,047만 7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20%로 전년도 불용액 62억 6,385만 3천원보다 26억 1,337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행정비 8억 8,081만 5천원, 사회개발비 22억 5,627만 7천원, 경제개발비 3억 4,244만 7천원, 민방위비 6,041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1,052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각각 발생되었음. 불용액은 전년대비 많이 감소되었으나 사회복지경비 미집행 등으로 아직까지 불용액이 과다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집행사유 미 발생 부분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부서별 불용액 과다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정과 분석을 통하여 내년 예산 반영시 참고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75억 6,837만 1천원으로 전년도 126억 8,044만 5천원에 비하여 40.31%인 51억 1,207만 4천원이 감소되었음. 그중 일반회계는 73억 6,511만 5천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이 24건 66억 6,441만 2천원으로 써 그 내용을 보면 전자교통카드결제용 단말기 설치는 2007년 전국통합카드발급시행으로 이월되고,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쓰레기수거처리비,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비, 신평1동쌈지공원조성공사, 다대해안도로공사, 해수욕장정비사업 등이며 대부분 사업기간부족, 시교부금지연, 공사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고 사고이월은 신평장림산업단지내보도정비사업 등 3건에 7억 70만 2천원으로 대부분 도로개설사업비임. 이월의 상당부분이 도로건설 및 도로유지 관리부분으로 국·시비 내시지연과 공사기간의 절대부족 등 원인이 되겠으나 민원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과 각종 시행계획 및 승인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현상도 초래 되고 있음. 세출예산의 이월은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사업을 지연시킴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함께 이월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
-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총 불용액은 30억 9,431만 1천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사용율은 6.6%로서 14억 2,645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불용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만 이는 타 · 구도 똑같은 실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건 대폭완화에 따른 차후 회수불능 경우 문제점, 기금의 구 금고 예치경우 이월 등, 앞으로 사업 자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개선

되어야 할 사항임. 명시이월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9,636만원, 계속비이월은 흥티마을공영개발사업비 689만 6천원 등

다. 기타 사항으로

- 채납정리에 있어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되는 누적채납액은 194억 1,40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27%인 6억 1,476만 3천원이 증가 되었고, 불납결손처분은 30억 7,702만 2천원으로서, 이를 세입별 불납결손사유 분석결과, 납부자 무재산이 1,555건 5억 7,728만 2천원, 시효소멸 완성이 6,391건 25억 3,58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무재산은 2억 9,161만 3천원, 시효소멸은 전년대비 무려 23억 7,237만 원이 각각 증가됨. 시효소멸은 대부분 세외수입으로서 이행강제금,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등이며 특히 채납처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관내 성화원 등 특수집단지역의 이행강제금은 그 특수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소속 부서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재산추적 등을 통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으면 불납결손율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됨. 또한 무재산의 경우도 전 행정력을 동원, 재산보유 여부를 끝까지 추적 재조사 파악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3건 1,426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인사정보시스템확산사업을 구 자체추진에서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한 대행사업으로의 변경추진, 괴정2동의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에 따른 경비지원 등 정책변경 및 신설에 따라 전용했으나 사회복지사무소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를 사회복지공무원 연찬참석경비 등 국내·외 출장여비 등의 전용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음.
-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금액은 총 4억 8,213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세 경우 1,161건에 1억 2,455만 2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착오부와 264건, 이중납부 783건, 소송패소 5건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도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 되었음. 과태료 등 각종 세금부와 시에는 관련법규를 사전 숙지하여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징수결정 오류로 인한 감액결정과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금액 증가 등의 빈번함은 해당구민의 세금에 대한 스트레스 가중은 물론 행정업무의 신뢰감을 잃는 원인이 되기도 함으로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임.

라. 기금운용

- 200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114억 7,598만 9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 4,768만 8천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4,419만 2천원이며 차인 잔액은 118억 7,948만 5천원임. 세부내용을 보면 사하구청사건립기금이 당해연도 적립금을 합해 96억 4,892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은 없으며 사하구복지장학기금은 당해연도까지 적립기금이 3억 1,380만 2천원으로서 장학금으로 1,080만원이 지출되고 3억 300만 2천원이 남았으며 사하구노인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금까지 2억 1,739만 8천원으로써 노인회 운영비로 350만원을 사용하고 2억 1,389만 8천원이 남아 있음. 사하구여성발전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금을 합하여 1억 5,238만 7천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신설사업인 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은 2억 5,212만 2천원으로 4천만원을 지출하고 2억 1,212만 2천원이 남아 있으며

사하구식품진흥기금은 1억 2,010만 7천원으로 음식문화개선비용 3,089만 8천원을 사용하고 8,920만 9천원이 적립되어있고 마지막으로 사하구재난관리기금은 총 16억 1,893만 7천원에서 재해예방공사로 3억 5,899만 3천원을 지출하고 12억 5,994만 3천원이 적립되어있음.

- 2006년도 기금사용내역을 보면 대체로 적정하게 사용 및 운영되었다고 보아지나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 2008년까지 7억원 조성목표를 위해 자활사업 수익금과 구 출연금으로 2005년 신설된 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 2억 1,212만 2천원에 불과하며 사하구식품진흥기금 경우도 2004년 이후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전무하고 이자수입 및 이월금만으로 적립되고 있어 이 또한 고유 목적사업과 목표달성 추진에 차질이 예상됨. 여성권익을 위해 설치된 여성발전기금도 하루빨리 조성을 완료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구 출연금과 기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있는 노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이자수입의 감소로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이 많이 줄어드는 등 안정적 수입에 의한 시책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어 지속적인 복지기금 준치가 필요
- 기금은 각종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있다고 하겠으나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